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1 발의연월일: 2020. 6. 16.

발 의 자 : 임오경·양이원영·장철민

황운하 · 조오섭 · 윤관석

박영순 · 권인숙 · 김경만

이원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병사는 예측 불가한 각종 사고나 재해에 대해 국가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제도가 없어 각종 사고 나 재해 발생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.

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현재 장교나 군무 원의 경우 민간병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단체보험 제도를 운영 중이 나 현역병의 경우에는 민간병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.

이러한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들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현역병들을 대상으로 한 '단체 실손보험제도'를 도입하여, 현역병의 민간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75조

의3).

법률 제 호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의3의 제목 "(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)"을 "(보험가입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가는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되는 각종 사고나 재해에 대한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험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국방부장관은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병무청 등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가입과 관련되는 기관·단체 등에게 필요한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5조의3(치료비 및 재해보상금	제75조의3 <u>(보험가입 등)</u> ① (현행
지급을 위한 보험가입) (생	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략)	
<u><신 설></u>	② 국가는 현역병의 군 복무기
	간 동안 발생되는 각종 사고나
	재해에 대한 치료 등을 지원하
	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
	있다. 보험가입 등에 필요한 사
	<u>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<u><신 설></u>	③ 국방부장관은 보험가입 등
	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병무
	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
	<u>가입과 관련되는 기관·단체 등</u>
	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
	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
	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
	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
	항에 따른 보험가입 등 업무의
	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
	<u>다.</u>